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4. 12. 19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4년 11월 13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4년 11월 19일

라. 상정일자 : 제185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
(2014년 12월 11일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복지국장 김찬재)

가. 제안이유

-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이 개정 공포되어, 이에 허가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세부기준을 정하고 기존에 규칙으로 운영해오던 고압가스사업의 세부기준도 동시에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·집단공급사업·저장소·판매사업·충전사업자의 영업소 허가기준의 세부사항 규정(안 별표)
- 고압가스 일반(냉동)제조·저장소·판매소·수입업소 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을 규정 (안 별표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이태선)

- 본 조례안은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이 개정되면서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 등 허가 권한이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이양되고,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- 주요내용을 보면,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, 안 제3조에서는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.
- 그 동안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근거하여 시행해 오던 가스사업 등에 관한 허가 기준이 상위 법령인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에서 가스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허가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취지에 맞춰 본 조례안을 마련한 것으로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.

향후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 운영되어 왔던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」은 폐지하여 조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제 30 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4. 11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이 개정 공포되어, 이에 허가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세부기준을 정하고 기존에 규칙으로 운영해오던 고압가스사업의 세부기준도 동시에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·집단공급사업·저장소·판매사업·충전사업자의 영업소 허가기준의 세부사항 규정(안 별표)
- 나. 고압가스 일반(냉동)제조·저장소·판매소·수입업소 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을 규정 (안 별표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및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없음
- 다. 협의사항
 - (1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 - (2) 부패영향평가 : 평가실시(의견없음)
 - (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실시(의견없음)
- 라. 기 타
 - (1) 입법예고(2014.10.16~11.5, 20일간) 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3조제5항과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4조제2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가스사업 등”이란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 및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3조 또는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.

제3조(허가기준)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은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, 해당 사업별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허가받은 가스사업 등의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.

【별표】

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기준(제3조 관련)

구분	허가기준
공통사항	<p>「건축법」, 「학교보건법」, 「소방기본법」, 「주택법」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환경기본법」,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, 「영유아보육법」 등 그 밖의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.</p>
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저장탱크는 지하에, 기계실은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. 2.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. 3. 용기 충전소 대지는 3,0000㎡이상, 자동차 충전소 대지는 1,000㎡ 이상이어야 한다. (타인 소유일 경우에는 소유자로부터 공증된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한다) 4. 저장설비·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·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는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」 별표 3 제1호가목1)가)의 2배로 한다. 5. 「도로교통법」 제6조제1항에 따른 탱크로리 통행금지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. 다만, 탱크로리 통행금지 지역내 신규설치가 아닌 기존 허가업소의 변경허가 사항은 제외한다.
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. 2. 개인의 경우 재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(법인의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)의 재원이 있어야 한다.
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용기보관실은 지상 1층에 설치하여야 하며, 면적은 38㎡ 이상이어야 한다. 2.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, 사무실은 18㎡ 이상이어야 한다 3. 제1종 보호시설내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4.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. 5. 용기보관실과 접하여 바닥면적이 23㎡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.

구분	허가기준
<p>고압가스 일반제조사업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독성가스가 아닐것 2. 가연성가스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할 것
<p>고압가스 냉동제조사업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. 다만, 기존업소의 냉동능력 범위에서 시설변경은 제외한다.
<p>고압가스 저장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가연성, 독성가스의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. 독성가스가 아닐 것. 다만 공공의 상·하수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.
<p>고압가스 판매소 및 고압가스 수입업소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고압가스 용기보관실은 그 보관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용적이 300m^3 (액화가스는 3톤)를 넘는 보관실은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안전 거리는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[별표4] 제1호가목1)가)에서 정한 거리의 2배로 한다. 2. 사무실 면적은 18m^2 이상이어야 하며, 가연성가스·산소 및 독성가스의 용기 보관실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고, 각각의 면적은 20m^2 이상이어야 한다. 3. 용기보관실은 지상 1층에 설치하여야 하며, 사업소 부지는 폭 8m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. 4. 고압가스판매소의 경우에는 용기보관실과 접하여 23m^2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. 5. 제1종 보호시설내에 설치하지 아닐것.